

가축의 출하 전 절식 지도 관리 강화

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

◆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)는 생산단계 축산물에서 가축의 출하 전 절식 지도·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'가축의 출하 전 절식 여부 판단 가이드라인'을 마련하여 조치사항을 안내하였다.

◎ 지자체(시·도, 시·군·구)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

○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가축이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12시간 이상(가금류 3시간 이상) 절식 여부 확인 및 지도·감독
* 축종별 절식여부 가이드라인(붙임) 참조

○ 가축사육농가에서 가축의 출하 전 절식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 개선에 필요한 지도와 행정처분 조치

- 타 시·도에서 출하된 가축의 경우 해당 농가 소재지 관할 시·도(시·군·구)에 시정명령 사실 통보

- 해당 농가 소재지 관할 시·도(시·군·구)에서는 농가별 시정명령 사항을 누적 관리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 농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* 철저

* 시정명령 미준수 시 1차 30만원, 2차 60만원, 3차 90만원 부과

○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(도축의뢰인)가 도축 신청시 절식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안내

◎ 공통사항

○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 가축이 출하 전 절식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축 사육 농가 대상으로 지도·홍보

붙임 | 축종별 절식 여부 판단 가이드 라인

축종별 절식 여부 판단 가이드라인



닭



- 적정절식시간 : 최소 8시간 이상, 8~12시간 범위 권장
 - 판단 부위 : 근위
 - 판단 기준 : 사료 잔여량 및 소화상태
- ※ 주의 사항 : 본 자료는 사료 종류와 조성, 개체별 사료 식습관, 섭취량 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



오리



- 적정절식시간 : 최소 8시간 이상, 8~12시간 범위 권장
 - 판단 부위 : 근위
 - 판단 기준 : 사료 잔여량 및 소화상태
- ※ 주의 사항 : 본 자료는 사료 종류와 조성, 개체별 사료 식습관, 섭취량 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

